##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: 신공단주유소

2. 성명(대표자): 김덕곤외1 (생년월일: 1949년 04월 24일 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240-1번지 외3

(전화번호: 011-235-6835 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지하저장시설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총3기 총용량:350,000.00 &

휘발유 50,000ℓ\*2기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 경 유 50,000 ℓ\*4기

등 유 50,000ℓ\*1기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 : 누유감지 경보기

나. 설치내용: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10년 4월 14일

경기도 안성사장이

<변경 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

## <참고사항>

일	] 자	내 용	확	인

## 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저장탱크	기타	100,000.0 ℓ	1	2010/04/14	원통
저장탱크	기타	200,000.0 <sub>ℓ</sub>	1	2010/04/14	원통
지장탱크	기타	50,000.00 ℓ	1	2010/04/14	원통

## <행정처분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